
주 제 발 표

제2주제 : 일명 ‘기사삭제청구권’(침해배제청구권)
도입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와 비판

문 소 영 (서울신문 사회2부장)

일명 ‘기사삭제청구권’(침해배제청구권)

도입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와 비판

- 청와대 등 정치권력과 부당한 공권력을 비호하는 수단이 될 것 -

문 소 영 서울신문 사회2부장

1. 기자는 왜 진실에 접근하기 어려운가

사례 1. 1991년부터 2014년까지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이라고 부른 사건이 있다. 2015년부터는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¹⁾이라고 부른다. 출판사 박문각이 펴낸 《시사상식사전》²⁾에 따르면 “한국판 드레퓔스 사건으로 불린다. 1991년 명지대생 강경대씨가 시위 도중 경찰의 쇠파이프에 맞아 숨진 사건에 항의해 분신한 김기설씨의 유서를 전민련 총무부장이던 강기훈씨가 대신 써줬다는 혐의를 받아 구속되어 복역했던 사건이다. 대법원은 18년 만인 2009년 이 사건의 재심 개시 여부에 대한 심리를 시작한 지 3년 만인 2012년 10월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2014년 2월 13일 서울고등법원이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검찰이 상고장을 제출해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그리고 2015년 5월 14일 대법원은 강기훈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요약되어 있다.

같은 책에 따르면 이 사건은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과 관련, 사건 초기부터 조작 의혹이 제기됐지만, 검찰과 법원은 ‘유서의 필적은 숨진 김씨가 아닌 강씨의 것’이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필적 감정 결과를 근거로 강씨의 유죄를 인정하였다. (중략) 강씨는 2009년 9월 유서를 대필하였다는 수사와 재판 결과는 잘못되

1) 앞으로 나오는 밑줄과 굵은 글씨체는 모두 필자 강조임

2) [네이버 지식백과]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28174&cid=43667&categoryId=43667>

었다며 재심 청구했고, 당시 서울고법 형사10부는 재심을 받아들였다. 검찰측인 서울고검 공판부(검찰)는 2009년 9월 법원의 결정에 대해 재항고(즉시 항고)했고, 대법원에서 18년 만에 재판을 다시 진행할지 여부를 최종 심리하게 되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3년이 지나도록 특별한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결정을 미뤄오던 중, 2012년 10월 19일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에 대해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하고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2012년 12월 20일 재심이 이뤄진 후, 2013년 10월 10일 재심 과정에서 전대협 노트와 김기설씨의 평소 글씨에 대한 감정이 국과수에 의뢰되었고, 국과수는 두 달 뒤인 12월 11일 김기설씨의 필적이 맞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2014년 2월 13일 서울고법은 1991년 제시된 국과수의 감정결과는 신빙성이 없다는 판단하에 강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하지만 2월 19일 검찰이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함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한 판단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마침내 2015년 5월 14일 대법원은 강기훈씨(51)에 대한 재심에서 자살방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는 1992년 당시 대법원이 유죄 확정 판결을 내린 지 23년 만이다. 국가 권력과 지난하게 싸워온 강기훈씨는 현재 말기암 투병 중이다.

사례 2.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이 있다. 지난 2000년 8월 최모 씨(32)는 전북 익산시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10년간 옥살이를 했다. 그는 다섯차례나 억울하다고 했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 결국 그는 16년 만에 재심을 청구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 재판장 노경필 판사는 2016년 11월 17일 이 사건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날 검찰은 진범으로 지목됐던 김모씨(35)를 강도살인 혐의로 붙잡아 구속했다. 검찰과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를 했다. 이 사건을 재수사 중인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2016년 11월 24일 “현재까지 드러난 재심 전후의 증거와 최근 수사 상황 등을 고려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상고 포기로 최씨의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사건의 증거를 재검토했고, 재심을 통해 실제적 진실이 규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오랜 기간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

은 최씨와 가족, 진범 논란을 지켜봐야 했던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11월 24일 이철성 경찰청장 명의의 공식 사과문을 내고 “앞선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³⁾과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의 재심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당시 수사 과정에서 적법 절차와 인권 중심 수사 원칙을 준수하지 못한 부분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재심 청구인과 가족, 사건의 피해 유가족 등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해 반성하고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경찰이 잘못된 사건 수사에 대해 경찰청장 명의로 공식 사과문을 발표한 것은 치안본부가 경찰청으로 바뀐 1991년 이후 처음이다.

사례 3. 지난 2007년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대통령선거 후보 경선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60·최서원으로 개명)의 관계를 폭로했다가 고법에서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 등 유죄 판결을 받은 김해호씨(66) 등이 약 9년 만에 재심을 청구⁴⁾했다. 김씨 등은 2007년 6월 기자회견을 열고 최씨와 박 대통령의 관계 등을 들어 각종 의혹을 제기했다. 최씨 부녀가 육영재단 운영에 개입해 돈을 빼돌린 사실이 있는지 등을 검증해 달라고 주장했지만 최씨와 박 대통령은 이들을 고발했고 두 사람은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최씨는 김씨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기도 했는데 최종적으로 김씨가 최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3) 임송학 기자, 2016. 7. 8, “16년 만에 억울한 누명 벗겨지나, 1999년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 재심결정”서울신문,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708500150#csidxdb9e8a5fe7fa2b992daf5b375990957>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사건’은 1999년 2월 6일 발생한 사건으로 오전 4시쯤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3인조 강도가 침입했다. 범인들은 잠자던 유모(당시 76세) 할머니의 입을 테이프로 막아 숨지게 하고 현금과 패물 등 254만원 어치를 털어 달아났다. 사건 발생 9일 후 강모 씨(당시 19세) 등 3명이 체포됐다.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청소년들이었다. 지적장애인도 있었다. 재판도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같은 해 3월 12일 재판에 회부된 뒤 대법원 선고까지 7개월 만에 끝이 났다. 1999년 10월 22일 대법원은 최종 유죄판결을 내렸다. 당시 최씨 등은 각각 징역 3년에서 6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같은 해 11월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가 부산지검에 접수되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당시 부산지검은 진범으로 지목된 용의자 3명을 검거해 자백까지 받고서 전주지검으로 넘겼다. 그러나 전주지검은 자백변복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중략) 3명 모두 수감생활을 마쳤고 사건 기록마저 폐기됐다. 16년이 지나 강씨 등 3명은 지난해 3월 5일 “경찰의 가혹행위로 인해 허위자백을 했다. 억울한 누명을 벗고 싶다”며 전주지법에 재심을 신청했다. “내가 이 사건의 진범이다”는 이모씨(48.경남)의 양심선언도 나왔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10년)는 2009년에 만료됐다. 이 사건은 재심 끝에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상고를 포기했다.

4) 성도현 기자, 2016. 11. 23., “‘최순실·박근혜 관계 폭로’ 유죄판결 김해호씨, 재심 청구”, 뉴스원, <http://news1.kr/articles/?2838851>

사례 4.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⁵⁾도 있다. 2013년 1월 국가정보원은 서울시청에 근무하고 있던 탈북 공무원 유우성씨가 간첩 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긴급 체포했고, 검찰은 2월에 기소했다. 유씨는 2004년 탈북한 재북화교 출신으로 2011년 서울시 공무원으로 특채됐다. 결정적 단서는 유씨의 여동생이 ‘자백’⁶⁾ 한 것인데, 그녀는 4월 기자회견에서 국정원 직원들로부터 폭행 및 회유, 협박을 당해 오빠가 간첩이라는 허위 진술을 했으며 기존의 진술을 번복했다. 2013년 8월 열린 1심에서는 유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된다. 2심에서도 무죄 선고를 받았고, 2015년 10월 대법원은 유씨의 간첩 혐의에서는 무죄 선고했다.

검찰과 권력자들이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그것을 둘러싼 진실이 밝혀지기까지 1974년 ‘민청학련 사건’ 등 30년 이상 걸리는 사건들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후 한 두 건이 아니다. 가장 가깝게는 2014년 11월의 ‘십상시 문건 유출 사건’이 있다. 당시 이 보도를 한 세계일보의 사장과 편집국장이 교체되고, 관련보도를 한 기자들은 회사를 떠나는 등의 우여곡절을 겪었다. 왜 그렇게 됐나. 박근혜 대통령이 ‘국기문란’ 사건으로 규정하고 검찰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자, 검찰을 총괄하는 민정수석 등이 검찰에게 그에 맞춰서 수사하도록 한 탓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중북’과 ‘빨갱이’로 낙인찍히는 순간, 국민이 투표로 뽑은, 면책특권이 있는 국회의원들과 소속 정당이 해체되는 상황에서 기자들이 “진실은 이러하다”라고 주장하며 기사화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합리적 의심’을 가지고 접근한다고 해도, 청와대와 여당대표, 민정수석 등등이 명예훼손죄로 해당 기자와 소속 언론에 소송을 거는 일이 반복되면, 언론조직도 달가워하지 않는다.

그런 사례는 ‘고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 비망록’⁷⁾에도 잘 나와 있다. 2014년 6월 30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높아진 검증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 분을 찾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웠습니다”라고 발언하고, 김기춘 당시 대통

5) [네이버 지식백과] 서울시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175243&cid=43667&categoryId=43667>

6) 뉴스타파 최승호 PD가 제작해 2016년 개봉한 영화 ‘자백’에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간첩’을 조작하는 과정과 유씨 여동생의 발언들이 묘사돼 있다.

7) 하누리 기자, 2016. 11. 16., [TV조선 특종] “김기춘 ‘비판 언론에 불이익 주라’”. TV조선,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1/15/2016111590017.html

령 비서실장은 수석회의에서 이렇게 발언하는 것으로 나온다. “일방적 지적, 비판을 그대로 두면 안 된다. **언론중재위 제소**, 고소고발 및 손해배상청구 등 상응하는 불이익이 가도록 철저하게 대응하라”. 즉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은 비판적인 언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언론중재위에 제소**, 고소고발 및 손해배상청구를 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이후 청와대는 2014년 초 비선실세 의혹을 다룬 시사저널과 일요신문에 대해 수천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가 이후 철회했다. 일종의 협박이라고 볼 수 있다. 청와대의 비위를 상하는 보도를 하면 거액의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이런 상황에서 대체 언론이 어떻게 제대로 진실에 접근해 보도할 수 있을까. 언론중재위는 권력의 도구처럼 보일 수도 있는 상황이다. 한국기자협회보는 2013~2015년 언론조정중재시정권고 사례집과 언론중재위에서 받은 자료를 종합해 취재 보도한 내용을 보면, 11월 15일 현재 대통령 경호실과 비서실 등 대통령 직속 기관의 중재위 제소 건수가 11건이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허현준 행정관 등 청와대 관계자들이 개인 자격으로 중재위에 청구한 것을 합치면 3~4건이 더 늘어난다고 밝히고 있다⁸⁾.

〈표 1〉 박근혜 정부 청와대 언론대상 주요 소송 현황⁹⁾

청와대 언론대상 주요 소송 현황(박근혜 대통령 재임기간 중)					
언론사	기사제목	보도일자	고소인·원고	사건명	진행상황
시사저널	청와대 비서관, 대기업 인사 김숙이 개입했다	2013.08.06	신동철 국민소통비서관	명예훼손 민·형사	변론보도문 신고 소 취하
국민일보	불통 청와대 진영 파동 불렀다	2013.10.04	김기춘 비서실장 등 2인	명예훼손 민사	소 취하
시사저널	[단독] 박지민 “경운회가 날 미행했다”	2014.03.23	김기춘 비서실장 등 4인	명예훼손 민사	언론중재위 조정제 따라 변론보도문 신고 소 취하
한겨레	‘쇼크 상태’였던 아이가 왜 박 대통령 현장 방문에?	2014.04.17	김기춘 비서실장 등 4인	명예훼손 민사	2심 원고 패소
CBS	‘조문 연출’ 논란 할머니, 청와대가 섭외	2014.04.30	대통령 비서실, 김기춘 비서실장 등 4인	명예훼손 민사	3심 원고 승소
시사인	사상 최대 대술 사기에, ‘그 이름’ 왜 잊을까	2014.06.09	곽상도 민정수석	명예훼손 민·형사	2심 원고 패소
세계일보	비리 혐의 비서관 1년째 내사 감감	2014.07.08	최수규 중소기업비서관	명예훼손 민·형사	언론중재위 조정제 따라 변론보도문 신고 소 취하
세계일보	[단독] 경운회 ‘국정 개입’은 사실	2014.11.28	이재만 총무비서관 등 8인	명예훼손 형사	소 취하
동아일보	김기춘, 교체설 조사 직접 지시했다	2014.12.08	김기춘 비서실장	명예훼손 형사	소 취하
시사저널	[단독] 어버이연합 “청와대가 보수집회 지시했다”	2016.04.20	허현준 행정관	명예훼손 민·형사	1심 원고 패소
조선일보	넥슨 1000억원대 처가 부동산 매매 의혹	2016.07.18	우병우 민정수석	명예훼손 민·형사	진행 중
경향신문	우병우, 경운회 물려 변론 의혹	2016.07.19	우병우 민정수석	명예훼손 민·형사	진행 중

청와대 등 권력기관은 보수단체를 활용해 언론을 옥죄기도 한다. 2016년 결국 법정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지만,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행적을 보도한 가토 전

8) 강아영·최승영 기자, 2016. 11. 22., “비판 보도에 고소·고발…청와대, 언론 상대 소송전쟁”, 한국기자협회보, <http://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40417>

9) 출처 : 한국기자협회보

산케이 신문 서울지국장은 자유청년연합 등 보수단체로부터 고발당해 가토에 대한 검찰수사 등이 외교문제로 부각되는 등 부작용도 나타났다. 또 입수한 태블릿 안의 연설문 등을 공개해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2016년 10월 24일에 제기한 JTBC와 손석희 JTBC사장은 어버이연합에 고발당한 상태다.

청와대와 정부여당의 언론중재위를 활용한 조정 신청이나 소송제기 등은 박근혜 정부에서만 있었던 일은 아니다. ‘진보 좌파 정부’로 이름이 난 노무현 정부 때도 조정 신청이나 소송이 많이 있었다. 주로 형사 소송보다는 징벌적 배상제도를 언론에 도입해야 한다는 소신으로, 민사소송을 많이 냈다. <표2 참조>

이와 관련해 자료를 찾아보면, 노무현 정부에서 내던 ‘청와대브리핑’에서 「조선일보가 (2007년) 12월 27일자 2면 ‘盧·청와대 언론 소송, 한건도 승소 없어’ 제목의 기사에서 청와대가 언론을 상대로 제기한 22건의 소송에서 한 번도 승소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8면 ‘노정권, 합법을 가장한 언론탄압’에서는 “소송 목적이 명예회복보다는 언론의 감시 기능을 위축시키기 위한 의도일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는 합법을 가장한 언론탄압”이라고 주장했습니다.」¹⁰⁾라는 내용의 기사가 검색된다. 이와 관련한 조선일보의 기사인 ‘盧·청와대 언론 소송, 한건도 승소 없어’를 온라인판인 조선닷컴(www.chosun.com)에서 찾아보았다. 관련 기사를 찾아볼 수가 없다. 링크 삭제된 것이다. 그래서 PDF판으로 찾아보았다. PDF판에는 2면에는 기사가 없고, 8면에 ‘노정권, 합법을 가장한 언론탄압’이라는 기사가 발견되었다. 그러나 다시 온라인 조선닷컴으로 관련 기사를 찾아보면, ‘노정권, 합법을 가장한 언론탄압’은 손태규 단국대 교수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50년사(1957~2007)에 기고한 ‘노무현 정권의 합법을 가장한 언론탄압’¹¹⁾에 대한 글을 요약 정리한 것으로 바뀌어 있었다. 날짜는 2007년 12월 27일자가 아니라, 2007년 4월 7일자 기사로 변경돼 있었다. 조선일보와 노무현 청와대가 으르렁 거리며 싸우던 기사는 다른 기사로 치환된 것이다. 이 글에서 손태규 교수는 “노무현 정부를 ‘언론중재위를 역대 어느 정부보다 집요하게 언론 견제수단으로 활용한 정권’으로 평가했다”고 했다. 김영삼 정부

10) 홍보수석실, 2008. 1. 2., “손바닥으로 하늘이 가려집니까?-조선, <합법 가장한 언론탄압>에 대한 반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23&oid=154&aid=0000000560>

11) 엄강수 기자, 2007. 4. 7., “노정권, 합법 가장해 교묘한 언론 통제”, 조선닷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7/04/07/2007040700035.html

와 김대중 정부에서 5년간 각각 27건, 118건의 조정신청을 낸 반면, 2006년 8월 현재 589건으로 한 달에 14번꼴로 조정신청을 냈다고 했다.

〈표 2〉 노무현 정부 청와대의 언론대상 소송 현황¹²⁾

청와대의 언론 상대 소송 현황 민사소송					결과				
원고·당사 직위	대상 언론사	소송제기 일시/사유	보도일자·내용	승소	패소	강제 조정	취하	진행중	
문화상 비서실장	동아일보	2003.7.16/ 손해배상	김원기·문화상 등 굿모닝 돈 수수(2003.7.16)				○		
문재인 민정수석	동아일보	2003.7.21/ 정정보도	청와대 언론대책반 가동 (2003.6.18)		○				
문재인 민정수석	조선일보	2003.8.11/ 정정보도·손 해배상	청와대. 정보누설자 처리 고 심(2003.7.4)		○				
양인석 사정비서관	동아일보	2003.8.11/ 손해배상	궤. 김영완씨 도난채권거래 지 민원 무시(2003.7.1)				○		
박범계 민정2비서관	중앙일보	2003.8.11/ 손해배상	신계륜. 박범계비서관 경질 요구(2003.7.28)				○		
문재인 민정수석	월간중앙	2003.8.11/ 손해배상	민정수석 작성 인사파일 (2003.4)			○			
노무현 대통령	조선·중앙 ·동아·한 국일보	2003.8.12/ 손해배상	노 대통령 실질 소유 '창수 전' 특허의혹 등(2003.5)				○		
정만호 의전비서관	시사저널	2003.11.17/ 손해배상	청와대 '강원도의 힘' 작용 했다(2003.10.30)		○				
노 대통령	조선일보	2004.1.26/ 정정보도	"검찰, 두 번은 갈아마셨겠 지만..."(2003.1.12)				○		
노 대통령	조선일보	2004.1.26/ 손해배상	"검찰, 두 번은 갈아마셨겠 지만..."(2003.1.12)				○		
전기정 혁신 기획비서관	서울신문	2004.3.24/ 손해배상	청와대 '참여'가 '혁신'을 이겼다?(2004.3.3)			○			
전기정 혁신 기획비서관	국민일보	2004.3.24/ 손해배상	'청와대 다잡이' 나선 노대 통령(2004.3.3)				○		
장준영 사회 조정1비서관 의	주간동아	2004.6.11/ 정정보도·손 해배상	대통령비서관 급여·활동비 월 1000만원 넘어(2004.6.3)			○			
노 대통령	조선일보	2006.2.15/ 정정보도	조선만평: 거짓말 금세 들들 (2005.8.9)				○		
노 대통령	조선일보	2006.8.28/ 정정보도	조선만평: 거짓말 금세 들들 (2005.8.9)			○			
이백만 홍보수석	조선일보	2006.7.18/ 정정보도	"성장은 빈곤에 가장 좋은 해독제"(2006.3.10)				○		
대통령 비서실	조선일보	2006.12.27/ 정정보도	"정치권 386. 국정원에 압 력"(2006.10.28) 의		○				
대통령 비서실	문화일보	2006.12.27/ 정정보도	盧정권 '親北기조'와 '386 간첩단' (2006.10.27)		○				
박선원 통일 외교안보전략 비서관	동아일보	2007.1.25/ 정정보도·손 해배상	일심회 보고서 "青비서관 수차례 등장" (2006.11.17)					○	
합계	19건			0	5	4	9	1	

형사 사건

고소인	대상언론사	보도내용·일자	결과
문재인 민정수석	월간중앙	민정수석 작성 인사파일(2003.4)	법원 무죄
대통령비서실	문화일보	국회에게 봉향무늬 특별제작(2003.8.6)	검찰 무혐의
황인성 시민사회비 서관	프런티어타임스	"청와대에 묵한 스파이가 침투했다" (2004.11.2)	검찰 무혐의

12) 출처: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50년사(1957~2007)에 기고한 손태규 단국대 교수의 '노무현 정권의 합법을 가
장한 언론탄압'

2. 언론중재법 개정안 일명 ‘기사삭제 청구권’(침해배제 청구권)에 대한 논의

가. 과거 기사 삭제의 필요성 제기

과거 기사 삭제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언론사들이 내부적으로 보관 관리해 오던 기사 데이터베이스를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고, 기사 유통을 포털과 제휴해 노출하기 시작하면서 거의 대부분 언론의 기사가 포털 검색을 통해 열람가능해진 상황에서 기인한다(이재진·구본권, 2008). 현행 언론중재법이 허용하고 있는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청구권은 보도가 된지 6개월이 지난 기사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언론보도의 역사적 기록물로서 고유의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검색결과 신문사의 데이터베이스를 삭제해달라는 것은 신중하게 해야한다.

이재진과 구본권(2008)은 1999년 1월 대법원 판결 이후에는 언론의 피의사실 보도 관행이 개선되고 사건 당사자의 실명 보도에 관한 기준이 엄격해 졌으나, 2000년 이전의 신문기사들에는 범죄 관련 보도에서 피의자의 실명을 보도하던 관행이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이재진(2009)은 인터넷에 게재된 과거 기사에 대한 삭제와 수정을 요구하는 당사자는 개인의 인권침해와 직결된다고 주장하면서 현재 법체계상 형법과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을 거론하며, 헌법 제13조가 규정하고 있는 ‘모든 국민은 동일한 범죄에 대해 거듭 처벌받지 않는다’는 이중처벌 금지 원칙 문제를 제기한다.

그러나 불완전하기는 하지만 언론사 내부에서 어느 정도의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다. 2006년 4월 한겨레신문은 독자권익위원회를 통해 과거기사 삭제 및 수정의 구체적 내부기준 마련했다. 기사를 수정·삭제해달라는 관련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만 해, 첫째 최종심(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이 나거나 무혐의가 밝혀진 경우, 둘째 오보였을 때, 셋째 불필요하게 개인정보가 노출된 경우에는 삭제한다는 지침을 마련했다(이재진·구본권, 2008). 이런 기준은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이 오래됐다고 해서 관련자의 요구대로 기사를 삭제할 수는 없고, 신문은 날마다 일어난 일을 기록한 일종의 역사적 기록물이라는 판단에서 도출된 것이다(이재진·구본권, 2008).

개별 언론사들이 자체적으로 과거기사 삭제 및 수정에 관한 내부기준을 마련하

여 집행하는 것이, 언론중재위와 같은 행정기관이 언론중재법을 통해 기사삭제 청구권을 허용하는 것보다는 언론 보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적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박정훈(2013)은 인격권의 구조에서 잊힐 권리가 모든 이가 그들의 개인사를 다시 기록하거나 쓸 권리를 가진다는 의미는 아니며, 개인사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권리를 의미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과거 개인의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사회적 평판으로 합리적 비판을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형의 집행이 끝난 경우라고 해서, 과거 언론 보도를 삭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나. 언론중재법 2015년 개정안과 ‘곽상도 의원 대표 발의 개정안’ 분석

1) 2015년 10월 13일 언론중재위원회의 개정안¹³⁾(이하 ‘언중위 개정안’)

언론중재위는 2015년 10월 13일 국회의원회관 2층 제1세미나실에서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새로운 언론피해구제제도 : 언론중재법 개정안 쟁점과 해설”을 통해 개정안을 내놓았다. 당시 개정안은

가) 언중위 개정안 제2조의15에서 ““언론보도”란 언론이 공공에게 정보와 논평을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고 했다. 이는 현행 ““언론보도”란 언론의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를 말한다”에서 크게 나간 것으로 흔히 스트레이트 기사 등 ‘사실기사’에 관해 잘잘못을 따졌던 관행에서 벗어나 신문이나 방송의 논평이나 사설 등 ‘의견기사’에 대해서도 언론중재위가 개입하겠다는 의미가 된다.

나) 언중위 개정안은 언론 등에 의한 피해구제의 원칙인 제5조제2항을 삭제했다. 현행 이 항목은 “인격권 침해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중략) 언론 등은 그 보도의 내용과 관련해 책임지지 아니한다. 1.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이루어진 경우, 2. 언론 등의 보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진실한 것이거나 진실하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이다. 개정안에서 삭제된 이 항목이 중요한 이

13) 문소영·김민정(2016), 기사 삭제 청구권 신설의 타당성 검토 잊힐 권리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76, 151-182.의 내용 일부를 재인용했음

유는 형법 제311조는 ‘오로지’라는 단서를 달기는 했으나 명예훼손의 면책 요건으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내용’이라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또한 이는 헌법재판소가 2013년 12월 26일 결정¹⁴⁾한 “공직자의 공무집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사생활에 관한 사실이라도 일정한 경우 공적인 관심사항에 해당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문제제기나 비판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판결에 반한다고도 볼 수 있다. 또한 판례가 인정하고 있는 ‘위법성 조각 사유’를 회피하는 것으로 해당 조문의 삭제는 문제가 있었다.

다) 언중위 개정안에서 신설된 제7조 12항(유사 뉴스서비스 전자간행물)에 대해 피해받은 경우 구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신생 매체인 소셜 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라온 뉴스와 논평 등을 규제할 방안을 마련해놓았다. 이는 제2조제15호에서 언론보도에 ‘논평’을 추가하지 않더라도, 의견기사에 대해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에서 뉴스가 소비되는 상황을 살펴볼 때 우려할만한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라) 언중위 개정안에서 신설된 제17조3(정보통신망의 인격권에 기한 침해배제청구권)은 인격권을 물권으로 보고 방해배제청구권의 법리를 도입한 것이다. 제17조의3의 5개항이다. 침해배제청구권의 요건을 밝힌 제1항은 “제1항1호가 보도내용이 허위이고, 피해자의 인격권 등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경우, 제1항제2호는 보도내용 자체로 보아 사생활의 핵심영역을 침해함이 명백할 경우, 제1항제3호는 기타보도가 피해자의 인격권 그 밖의 권리를 계속적으로 중대하게 침해하여 이를 방치하면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했다.

제1항제1호의 허위보도의 경우는 현행 언론중재법에서도 정정보도와 반론보도를 통해 바로잡고 있다. 언론사에서는 이미 단순 사실의 오보로 판단된 기사는 바로잡아서 포털 등으로 재전송하고 있다. 문제는 당사자는 허위라고 주장하고, 언론사는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법적인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사법부의 판단 완료되기 이전에 언론중재위가 언론사 데이터베이스(서버)에 있는 기사를 삭제

14) 헌법재판소 2013. 12. 26., 2009헌마747 전원재판부 결정

하라고 주장할 수 있는가 의문이다.

제1항제2호의 경우 ‘사생활의 핵심영역을 침해함이 명백한 경우’에 대한 판단을 누가 할 것이냐는 것이다. 언론중재위에서는 사생활 핵심영역을 ‘독일 판례에서 확립된 성적 영역 및 내밀 영역’으로 제시했다. 그렇다면 논의의 심도를 높이기 위해 사례를 제시해보자.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식 의혹보도는 사생활의 핵심영역인가 아닌가? 또는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및 동영상 존재 의혹은 사생활의 핵심영역인가 아닌가. ‘대통령의 7시간’은 논의대상인가 아닌가. 과연 이런 의혹은 보도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또한 행정기관인 언론중재위가 사법부에 앞서 판단하고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각 나라마다 인격권의 핵심이라 판단하는 기준이 서로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과연 독일의 판례처럼 좁은 기준을 택할지, 한국처럼 명예훼손 소송이 남발하는 사회에서 갈등을 줄인다는 명분으로 더 넓게 기준을 잡을지, 그 판단은 행정기관이 아니라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선고와 판결 등으로 잡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1항제3호는 사전 보도금지(방해예방 금지)나 사후 기사삭제(방해제거청구) 역시 대법원의 결정(2003마1477결정)과 대법원의 선고(2012다60950 판결)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나, 언론중재위는 자신들이 사전 금지가 아니라 사후 금지로 완화된 기준을 썼다고 한다. 즉 헌법 제21조2항의 검열이 아니라는 주장인 것이다. 언론중재위는 기사삭제의 경우 “예외로 오보 자체가 역사적 의미를 갖는 경우에는 삭제청구권의 보호 이익을 거부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의 다툼 역시 법원이 판단할 문제라고 본다.

제4항의 단서조항 신설도 흥미롭다. 기사삭제청구권의 행사기간을 ‘침해를 받은 것을 인지한 시점부터 1년’으로 정한 것이다. 이는 현행 정정·반론보도의 기준으로 잡고 있는 제14조에서 “언론보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언론보도 등이 있는 후 6개월 이후”에는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과 비교할 때 산술적으로 기간이 2배 이상 길어졌다. 신설 개정안은 기사삭제청구권을 보도한 시점이 아니라 ‘인지’한 시점으로 잡았기 때문에 사실상 언론사가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쪽으로 전환된 것이다. 마치 검찰이나 경찰이 공소시효를 적용할 때 사건 발생시점이 아니라, 수사한 시점으로 잡는 것과 비슷하다. 현재 한국은 살인사건에 관해서

만 공소시효를 무한대로 둔 ‘태완이법’을 두고 있다.

제17조의3의 제2항에서 위법한 보도를 퍼간 게시자들에 대해 기사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언론사가 확산방지에 대해 협조해야 한다는 규정은, 언론사와 언론인들에게 위축효과를 던져 줄 수밖에 없다. 이미 언론은 사실보도와 진실보도를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댓글이나 퍼간 게시물을 관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수가 있다.

마) 또 언중위 개정안에서 신설된 ‘제18조의 2’는 인터넷상의 침해적 보도의 확산과 전파에 대한 대책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이미 정보통신망법 44조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또한 문제적인 댓글방지는 언론중재위의 과도한 업무확장이라는 평가다. 또한 인터넷 댓글 등에 대한 규제는 현재 방통심의위에서 하고 있는 만큼 업무가 중첩된다.

2) 광상도 의원 대표발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분석

(이하 ‘광상도 개정안’)

‘언중위 개정안’에 대해 문소영·김민정(2016)의 논문 ‘기사삭제 청구권 신설의 타당성 검토 - 잊힐 권리를 중심으로’와 신문협회보(제522호, 2016년 8월 31일자, 1~2면)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진행된 뒤 광상도 의원(새누리당)은 2016년 10월 28일 의원입법을 통해 일명 ‘기사삭제 청구권’이 포함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언중위 개정안’에서 일부 수정해 국회에 제출했다.

‘광상도 개정안’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언중위 개정안’에서 크게 논란이 됐던, 제2조(정의) 제15호 언론보도에 대한 정의에 논평을 포함하지 않고, 제5조(언론등에 의한 피해구제의 원칙) 제2항은 삭제하지 않고 현상유지 했다.

가) 대신 광상도 개정안은 제1조(목적)과 제7조(언론중재위원회의 설치)에 검색서비스를 추가했다.

나) 광상도 개정안은 제2조제22호에서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정보통신망의 정의를 규정하고, 제23호와 제24호에서 검색서비스에 대해, 제25호에서 게시판에 대한 정의

를 신설했다.

다) 확산도 개정안은 제4장 정보통신망을 통한 언론보도 피해에 대한 구제 특례를 신설하고, 제33조 제1항~제8항까지 신설했다. 이는 ‘언중위 개정안’ 신설조항인 제17조3와 역시 신설조항인 제18조2를 제33조제1항~제5항에서 포괄했으며, 신설조항 제7조제12항은 제33조6에서 포괄했다. 제33조의 신설안에서 눈에 띄는 것은 현행 언론보도 ‘피해자’라고 지칭했던 단어를 ‘인격권 피해자’라고 변경해, 명분 쌓기와 공감대 확산에 주력했다는 점이다. 신설조항인 ‘침해배제 청구권’을 ‘기사삭제 청구권’으로 쓸 때 더 공감이 형성되는 것과 비슷하다. 따라서 관련 신설 법조항에 대한 우려와 비판은 ‘언중위 개정안’에 있는 내용과 같다.

3. 결론¹⁵⁾

각 문화권마다 ‘기록’과 ‘사생활’에 관한 인식의 차이가 존재한다.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기록을 소중하게 생각했던 한국의 문화에서는 잊힐 권리보다 기록할 권리, 사생활보다는 알권리가 더 중요하게 자리잡아온 전통이 있다. 유네스코 기록문화로 선정된 ‘조선왕조실록’의 존재를 생각해도 그렇다. 조선 태종이 사관에게 말에서 떨어진 것을 기록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 발언까지 기록하는 치열함이 한국인의 피에는 흐른다고 봐야 한다. 왕조국가에서 지엄했던 왕의 사생활과 인격권을 존중하기보다 후세에 기록을 남겨서 역사에서 평가하려는 노력이 더 절실했다고 볼 수 있다.

언론 보도는 사관이 존재하지 않는 현대에 조선왕조실록을 기록한 사관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때문에 기사삭제 청구권을 발동해 원래의 기사 자료를 삭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 ‘오보’조차도 일단 공포되고 나면 사회적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기 마련이다. 구본권(2015.8월)은 ‘김일성 사망 오보’로 국내 증시가 급락한 사례를 들어 사회적 영향력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당사자가 권리 구제를 요구한다고 해서 관련 ‘오보’를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등으로 흔적을

15) 문소영·김민정(2016), 기사 삭제 청구권 신설의 타당성 검토 잊힐 권리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76, 151-182.의 내용 일부를 재인용했음.

없애게 될 경우 ‘역사적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 했다. 또한 첫 보도는 ‘오보’였을 지라도 전모가 드러날 때까지 시일이 필요하고, 또한 각종 제보가 모여져 진실이 실체를 밝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접근할 것을 제안하고, <뉴욕타임스>가 날조오보 기사를 삭제하지 않고 보존한 뒤 ‘편집자 알림’ 등 관련 기사의 문제점을 지적한다는 점을 사례로 들었다.

이런 차원에서 언론중재법의 ‘기사삭제권’ 신설의 법적 토대가 된 2013년 대법원 판결¹⁶⁾에 대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대법원은 이미 기록된 언론의 기사를 인격권 침해로 문제 삼아서 기사 자체를 언론사 사이트와 포털 사이트 모두에서 삭제하도록 했다. 즉 “기사(49건)을 삭제하고 미디어 다음, 네이버 등의 포털사이트에 해당 기사의 삭제를 요청하라”는 원심을 인용해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의 판결은 삭제된 49건의 기사가 “표현의 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이 아닌 기사”라는 전제가 달려있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언론중재위가 ‘기사삭제 청구권’을 제33조에 신설하기 위해 대법원의 해당 판례를 가져왔으나, 기사 삭제의 전제가 된 ‘허위보도’와 ‘공공의 이익과 관련 없는’이라는 사실을 간과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

이 판례는 2014년 유럽사법재판소의 ‘링크 삭제’의 판결이 나오기 1년 2개월 전인 2013년 3월에 나왔다. ‘잊힐 권리’로 그 출발이 시작됐으나, 유럽의 링크 삭제 도입과 한국의 기사 삭제 도입은 일반적인 표현의 자유뿐만 아니라 전문직으로서의 언론의 자유를 크게 억압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재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공직자는 물론 공인들이 명예훼손죄로 소송을 걸고 한국에 존재하는 다양한 명예훼손을 구제하는 법령을 활용해 마땅히 제기되어야 할 의혹에 대한 기사 삭제 요청이 언론의 발목을 잡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서 ‘기사삭제 청구권’이 도입된다는 것은 염려스럽다.

한국은 링크삭제를 통해 잊힐 권리를 확립해나가는 유럽과도 법적 여건이 다르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제33조’를 신설하지 않더라도 한국에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라 온라인 게시물의 삭제 및 임시조치가 가능하다. 또한, 개인정보의 보호

16) 대법원 2013.3.28., 선고, 2010다60950

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에 규정되어 있는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요구권과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개인정보 파기 의무 조항을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황창근, 2015). 따라서 이진규(2014)가 지적하고 있듯이 “공인에 대한 일반 대중의 알권리와 더불어 그들에게 기울어져 있는 권력의 불균형에 맞서기 위해 ‘잊지 말아야 할 의무’에 대한 논의가 한국 같은 권위주의적 풍토에서 필요하다”(33쪽)고 하겠다.

언론중재위는 언론계를 모두 모아 ‘기사삭제 청구권’ 신설과 관련해 의견수렴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체적인 언론 종사자들은 언론사의 서버에서 기사를 삭제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이 개정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 디지털 언론이 확산되는 변화의 시기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은 형성되지 않아 이른바 전통 미디어라 부르는 신문사와 방송사들이 악전고투하고 있기 때문에, 자사의 재산인 기사의 삭제와 관련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관심을 쏟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또 언론중재위에서 언론사의 편집국장이나 보도국장, 또는 언론사의 최고경영진과 만나 이런 법안의 개정에 대해 논의했다는 소식도 들어본 적이 없다. 일부 디지털관련부서의 장을 불러 논의를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언론중재위가 현재 ‘전통 미디어’들의 의사결정 구조에 대해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다. 때문에 이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된다면 언론사들과의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농후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언론중재위에서는 ‘기사삭제 청구권’이 포함된 제33조 신설과 관련해 더욱 신중하고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신문사 등에서는 오보 등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기사에 대해 뉴스소비가 구제요청이 있을 경우 자발적으로 또는 수시로 수정하거나, 포털 등에서 링크삭제가 이루어져 검색되지 않는 등의 구제책을 실행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도 언론사 서버에 있는 원래의 기사를 삭제하지는 않는다. ‘기록자’로서의 언론의 역할에 충실하려는 노력이다. 현재 ‘오보’로 진단됐다고 하지만,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진실’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사삭제 청구권’ 신설은 언론중재위가 언론사에 강제로 규율할 사항이 아니라, 현재 언론사들이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응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다. 더불어 언론

중재위는 사법부가 아니라 민간인들이 참여했다고 하지만 행정기관이다. 대법원이 나 헌법재판소 등에서 법적 판단이 나지 않은 다툼이 있는 기사에 대해 행정지도로 손쉽게 해결한다면 ‘언론의 자유’를 심대하게 훼손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한국 언론계는 공인의 인격권이나 명예훼손과 관련해 잦은 논란을 겪고 있다. 그렇다면 사법적인 논란에 휩싸이기 전에 중재를 통해 언론의 자유를 보호한다는 언론중재위에서는 오히려 ‘공인’과 ‘공공의 이익’, ‘공인에 대한 알권리’ 등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형성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언론사의 데이터베이스에까지 기사삭제 청구권을 적용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국민적 저항도 초래할 수 있다.

참고 문헌

- 구본권(2015, 8월) “지정토론 I, 기사삭제청구권 도입에 관하여”, <디지털 시대, 언론 중재제도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2015년 언론중재위원회 정기세미나 자료집, 45~50.
- 김민정 (2015a). “실질적 잊힘의 관점에서 본 잊힐 권리의 성격 및 의의”. <언론과 법>, 14권 1호, 219~248.
- 김민정 (2015b). “‘검색결과목록 링크삭제청구권’으로서의 잊힐 권리의 적용 기준에 관한 해외동향”. <언론중재>, 2015년 가을호, 110~120.
- 대법원 2013.3.28. 선고 2010다60950판결
- 문소영·김민정(2016), “기사 삭제 청구권 신설의 타당성 검토 잊힐 권리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76, 151~182.
- 박경신 (2015, 1, 5). “‘잊혀질 권리’ 법제화 누구를 위한 것인가”, <PD저널>.
- 박정훈 (2013). “잊혀질 권리와 표현의 자유, 그리고 정보 프라이버시”, <공법학연구>, 14권 2호, 569~601.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15. 10.).

이승선 (2013). “명예훼손 사유 임시조치 요청에 대한 심의결정 리뷰”. <KISO 저널>, 10호. URL: <http://journal.kiso.or.kr/?p=2365>

이승선 (2014). “공인 관련 보도기사 매개 게시물의 온라인상 표현 자유의 수위 제고 필요성”, <KISO 저널>, 14호. URL: <http://journal.kiso.or.kr/?p=4225>

이재진 (2009). “인터넷에서 피해구제를 위한 ‘잊혀질 권리’의 정립”. <미디어 산업을 넘어 경쟁력 있는 사회 시스템으로>. 75~125. 한반도 선진화재단.

이재진 · 구본권 (2008). “인터넷 상의 지속적 기사유통으로 인한 피해의 법적 쟁점; 잊혀질 권리 인정의 필요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방송학보>, 22권 3호, 171~212.

이진규 (2014). “포털 현장에서 바라본 잊혀질 권리”, <언론중재>, 2014년 가을호.

헌법재판소 선고 2009헌마747 판결 (2013. 12. 26.)

황창근 (2015). “정보삭제권리(소위 잊혀질 권리)의 국내 적용 및 법제화의 한계”. 프라이버시 정책 연구 포럼. 정보삭제 권리의 올바른 인식을 위한 국제컨퍼런스.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